



<b>고객분류</b> (모든 단체 고객은 아래5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한가지 유형과 해당 세부유형을 선택하여 체크하세요)		예	아니오
4	보고제외 법인 <input type="checkbox"/> 01.주권상장법인 <input type="checkbox"/> 02.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input type="checkbox"/> 03.정부기관(정부소유법인포함) <input type="checkbox"/> 04.중앙은행 <input type="checkbox"/> 05.국제기구		
5	수동적 비금융법인 (위 ①, ②, ③, ④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 법인은 수동적 비 금융법인에 해당합니다.)		
A	귀 법인은 실질적 지배력(25% 초과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포함)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가 있습니까?		
실 질 지 배 자	영문 성(Last Name)	생년월일(Birth date)	영문 주소(Address in Jurisdictions of residence)
	영문 명(First Name)	관할지국(Jurisdictions)	납세자 번호(TIN)      납세자번호 미 기재 사유(IF not TIN, Reason)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요구 국가 <input type="checkbox"/>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귀사(보험회사)에 통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명)
(관인 또는 직인날인)

## 고객 인적 사항

당사와 거래 시 제공하셨던 기본 정보가 출력됩니다. 정보제공 부족으로 누락된 항목은 해당 시 반드시 자필입력바랍니다. 귀 업체의 법인등록번호는 국내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 지 또는 소재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내법인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납세자인 경우 작성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하여 미국 및 대한민국 이외에서 납세여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세목적상 미국을 포함하여 해외 납세의무 단체인 경우에는 납세자번호(아래 참고)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별 기업의 TIN 자리 수 - 괄호 안은 별칭-아라비아 숫자 자릿수임 ]

미국(EIN-9), 중국(기존-15, 신규-18, 8숫자+10자리 문자), 일본(Corporate Number-13), 인도(PAN - 10 (5문자+4숫자+1문자)), 호주(ABN-11), 프랑스(numero SIREN-9), 영국(UTR - 10 또는 NINO - 9자리문자(2문자+6숫자+1문자:ABCD)), 캐나다(BN-9), 싱가포르(UEN(ROB) : 8숫자+1문자, UEN(ROC, Others) : 10자리숫자, ASGD : A+8숫자, ITR : 4+8숫자+1문자), 말레이시아(Nombor Rujukan Cukai-10)

## 고객분류

### ① 능동적 비 금융 단체여부

<능동적 비 금융 단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이행규정 제5조제13항 제1호 내지 제9호).

신생 법인	비금융단체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비 금융 단체의 최초 설립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외.
청산 또는 조직변경 중인 법인	지난 5년간 금융회사가 아니었던 비금융단체가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거나 재개하려는 의도로 사업재편 중인 경우
공익적 법인	<b>비금융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b> 가. 오직 종교적, 자선적,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 체육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거주지 관할국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될 것 또는 거주지 관할국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며 오직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조직, 사업자단체,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또는 조직에 해당할 것 나. 거주지 관할국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것 다. 수입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지 관할국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수입이나 자산이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의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비금융단체가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거주지 관할국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청산 또는 해산 시 그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거주지 관할국의 정부 또는 그러한 정부의 하위단체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지주회사/재무센터/전속금융회사 등	비금융 단체의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발행 주식(전부 또는 일부)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 다만, 해당 비금융 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제외한다)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금융그룹	비금융단체가 주로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단체와(특수관계단체를 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금제공 및 해지 거래를 하고,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게는 자금 또는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야 한다.
미국령 소재 단체	비금융 단체로서 미국령에 설립되고 모든 수익적 소유자가 그 미국령의 진정한 거주자인 경우
미국연방세법 501(C)법인	비금융단체가 미국 연방세법 제501(c)에 해당하는 예외적 비금융 단체인 경우
능동적 일반법인	비금융 단체의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자산의 매각·교환에서 발생한 이익, 선도·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및 현금가치보험계약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을 말함)이고,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 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미만이 수동적 수입(이자, 배당, 임대료, 수동적 자산매각이익 등에 의한 수입, 적극적 임대활동에 의한 임대수입은 제외)이고, 직전연도 보유자산 중50%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제의 미국법인이 아닌 경우 특정미국인을 선택하여 주세요.(이행규정 제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12호)

유형	설명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권상장법인 회사와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미국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다)의 계열사인 모든 회사
미국 정부기관 등	미국, 미국 정부소유기관 또는 미국정부대행기관
미국령 지역 관할정부(기관) 등	미국 주, 미국령, 미국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조직, 미국 주 및 미국령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소유기관 또는 대행기관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 또는 퇴직연금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 또는 퇴직연금
미국 소재 은행	미국 세법에 따른 은행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신탁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신탁
미국 소재 특정규제 대상 투자회사 등	미국 세법에 따른 규제 대상 투자회사 또는 미국의 1940년 투자 회사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법인
미국 소재 공동 투자신탁 펀드	미국 세법에 따른 공동투자신탁펀드
미국 소재 특정 면세신탁 등	미국 세법에 따른 조세가 면제되는 신탁 또는 미국 세법에 따른 신탁
미국 소재 특정 금융상품 딜러	유가증권, 상품,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옵션 포함)의 거래업자로서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미국 소재 특정 중개인	미국 세법에 따른 중개인

## ③ 금융회사인 경우

미국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관할지국 금융회사에 대한 구분입니다.

	유형	설명
종 류	예금기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 또는 이와 유사한 통상적인 영업과정(자금대출,어음할인,내/외국환)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단체
	수탁기관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 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제외한다.
	투자법인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으로 운영하는 단체 및 그 단체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채투자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외국환, 환전, 이자율과 지수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및 상품선물거래 2. 타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관리 그 밖에 타인을 대신하여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
	특정보험회사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단체
추 가	보고대상 관할권 [ 대한민국 또는 미국 및 다자간 조세조약 협정국가 등(MCAA) ] 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며, 다른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투자법인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 실질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㉔ - A 의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작성해야 함)	
	국내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이면서 미 국세청(IRS)에 의해 비 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금융회사인 경우	
	FATCA 협력관할권이 아닌 국가의 금융회사로서 미 국세청에 글로벌 금융회사 등록번호(GIIN)가 등록되어 있는 금융회사인 경우	
글로벌금융기관등록번호(GIIN)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는 총 마침표를 포함하여 19자리로 '6자리(숫자+문자).5숫자.2문자.3숫자' 로 구성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이 없는 경우 아래 보고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비 보 고	FATCA/CRS 공통비보고	다수참여 퇴직펀드	<p>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제21조 제6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li> <li>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에게 퇴직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li> <li>3. 펀드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li> <li>4. 펀드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li> <li>5.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li> <li>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기여할 것</li> <li>다. 퇴직,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특정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 할 것</li> <li>라. 특정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li> <li>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일 것</li> </ul> </li> </ol>
		소수참여 퇴 직펀드	<p>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제21조 제7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li> <li>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에게 퇴직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li> <li>3. 참가자가 50인 미만일 것</li> <li>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 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li> <li>5.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li> <li>6. 펀드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li> <li>7.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li> </ol>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	신탁의 수탁자가 금융회사이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보고 대상 관할권에 신탁의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의 신탁을 말한다. 단,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신탁의 수탁자가 보고금융회사,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FATCA 참여금융회사이고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신탁을 말한다.(제21조 제10항)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자신탁	<p>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보고 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FATCA 비참여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 및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자문 제공</li> <li>2.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li> </ol>
		정부단체 등 의 연금펀드	<p>정부단체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 (제21조 제8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단체 등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가자(근로자가 지정된 자를 포함)</li> <li>2.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부단체 등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가자</li> </ol>
		별정우체국 연금관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CRS비보고	면제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또는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를 말하며,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다.(제21조 제9항)
		국내지점 전용회사	<p>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제21조 제12항 제2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li> <li>2.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 금융계좌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li> <li>3.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 절차를 준수할 것</li> <li>4. 금융회사가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없을 것</li> <li>5.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매년 금융계좌와 관련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할 것</li> </ol>
		금융위 인정 금융회사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우리나라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로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회사.(제21조 제12항 제3호)

비 보 고	FATCA 비보고	지역고객 기반회사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지역은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제22조 제2항 제2호) 가. 다음 각각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2)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3)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이고 총 자본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나.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를 갖지 아니하거나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가지지 유지하지 아니할 것 다.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아니할 것 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1억 7천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각 특수관계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회사인 특수관계 단체는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소액계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제22조 제2항 제3호) 가. 투자단체가 아닐 것 나. 금융회사 또는 특수관계단체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 중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가 없을 것 다.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회사와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기타	피후원(폐쇄형) 투자기구, 피지배 외국회사, 국내설립 면제 집합투자기구, 제한된 펀드(2017.01.01까지), 적격퇴직 연기금, 특정 투자법인 등이 있음

#### ④ 보고제의 법인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인 비 금융 단체
주권상장법인의 특수 관계법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비 금융 단체
정부기관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정부단체 등 또는 정부단체 등이 완전히 소유한 단체인 경우.
중앙은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국제기구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가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⑤ 수동적 비 금융 법인

실질적 지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동적 비 금융 법인'란 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실질지배자]

귀 법인에 대한 지분을 25% 초과 보유한 해외납세의무가 있는 실질지배자(개인)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관할지국(납세지국), 영문주소, 납세자등록번호 (국가별 납세자번호 체계 참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납세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